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

의안 번호 837

2019. 9. 3 도시계획관리위원회

I. 심사경과

- 1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9. 8. 7. 이성배 의원 발의
- 2. 회부일자 : 2019. 8. 13.
- 3. 상정 및 의결일자
 - 제289회 임시회 제3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(2019, 9, 3, 상정·의결)

Ⅱ. 제안설명의 요지 (이성배 의원)

- 1. 제안이유
 - 공기업 사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경영에 임하게 할 필요가 있음
- 2. 주요골자
 - 사장이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함(안 제9조)

Ⅲ. 검토보고 요지 (조정래 수석전문위원)

○ 이 개정안은 지방공기업인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으로 하여금 책임감을 가지고 경영에 임하게 하기 위하여, 사장의 임무에 대 하여 포괄적으로 표현되었던 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사항으로, 이성배 의원 외 10인이 공동발의하여 2019년 8월 1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임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사장) ① (생 략)	제9조(사장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	②
를 <u>총괄한다</u> .	<u>총괄하며, 경영성과에 대하여</u>
	<u>책임을 진다</u> 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
- '사장'의 임무와 관련하여 「지방공기업법」제58조제4항에는 지 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에 해임하거 나 임기가 끝나더라도 연임시킬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, 개정 조례안은 사장의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한 「지방공기 업법」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여짐.
- 또한 「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('19.3.22 개정)」제13조에도 개정조례안과 같이 '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 괄하며 경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'라고 규정되어 있어, 조례개정안에 대한 이견은 없음.
- 참고로, 서울시 투자기관 5개소 중 기관의 설치 근거 조례에 사장의 책임성에 관한 규정이 이미 반영된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 공사1)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공사2)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개

정조례안이 동시 발의되어 금번회기에 처리될 예정임.

Ⅳ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V. 토론요지 : 생략

VI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(출석위원 전원 찬성)

Ⅷ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^{1) 「}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8조제3항(2010.4.22. 개정)

²⁾ 서울주택도시공사(의안번호 837), 서울에너지공사(의안번호 836), 서울시설공단(의안번호 835), 서울 교통공사(의안번호 834).

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이성배 의원 대표 발의)

발의년월일: 2019년 8월 7일

발 의 자: 이성배, 이영실, 권수정,

임종국, 경만선, 고병국,

이병도, 권영희, 김정태,

문병훈, 여명 의원 (11명)

1. 제안이유

의안

번호

837

공기업 사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경영에 임하게 할 필요가 있음

2. 주요골자

사장이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함(안 제9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지방공기업법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 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 중 "총괄한다"를 "총괄하며,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"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사장) ① (생 략)	제9조(사장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	②
의 업무를 <u>총괄한다</u> .	총괄하며, 경영성과에 대
	<u>하여 책임을 진다</u> 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